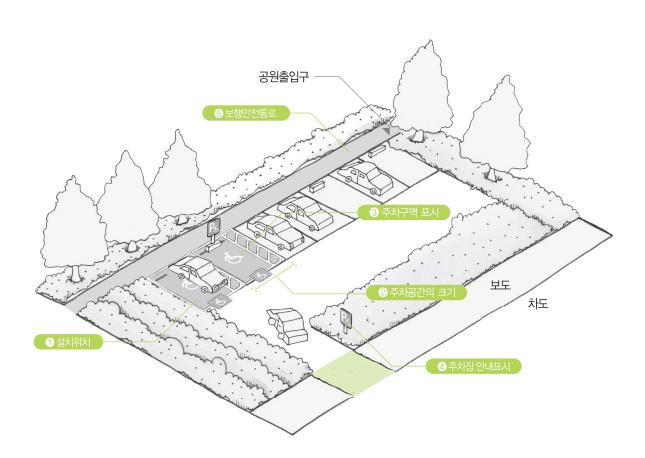
# 2. 주차장



# ■설치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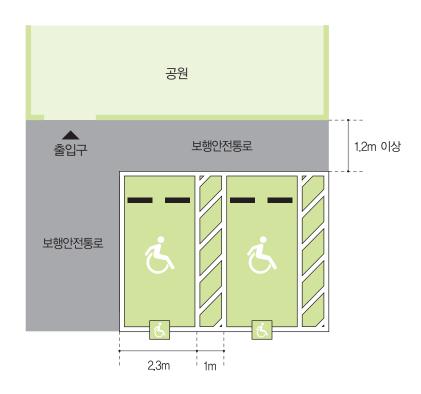
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 목적지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일한 이동수단이다.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이용객이 안전하게 차량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. 즉, 겸용되지 않는 유일한 편의시설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다.

# ■설치요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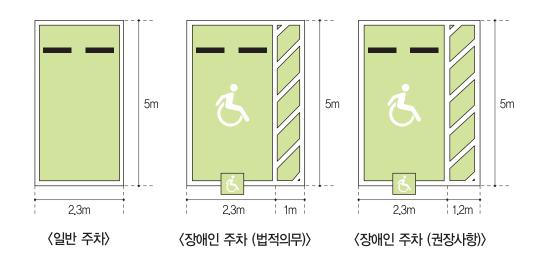
- 공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접근의 어려움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.
-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안전통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

### 1) 설치위치

-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짧은 경로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필요시 일반 주차장과 분리하여 공원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.
- 이 경우 차도와 분리가 용이하고 보행안전통로의 확보가 용이하다.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공원 내 산책로에 이르는 보행안전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, 그 유효폭은 1,2m 이상으로 하며, 연속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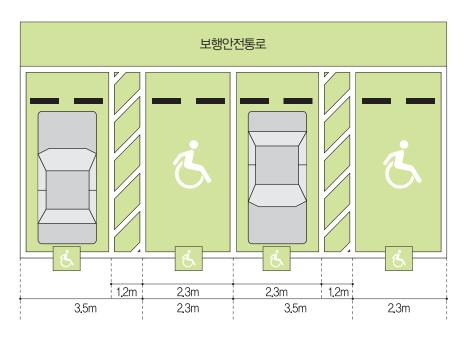


- 2) 주차공간의 크기 ·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최소 폭 3.3m 이상,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평행 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,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 - 주차차량 측면에 있는 휠체어 활동공간의 폭은 1.2m 이상이어야 한다.
  - 가능하면 주차공간 양측 모두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면 편리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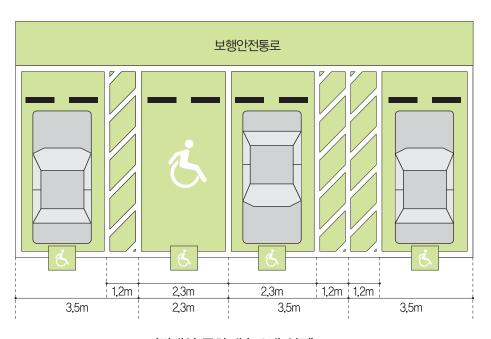


# 3) 주차구역 표시

- 주차구역의 바닥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보행안전통로 1.2m를 주차폭 2.3m의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보행안전통로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(단 휠체어 활동공간을 공유하는 경우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함)
-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는 차량 주차구역과 분리하여 바닥면에 표시하면 유리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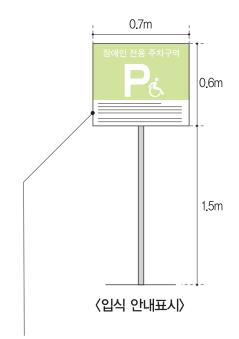


〈장애인 주차대수 2대 인정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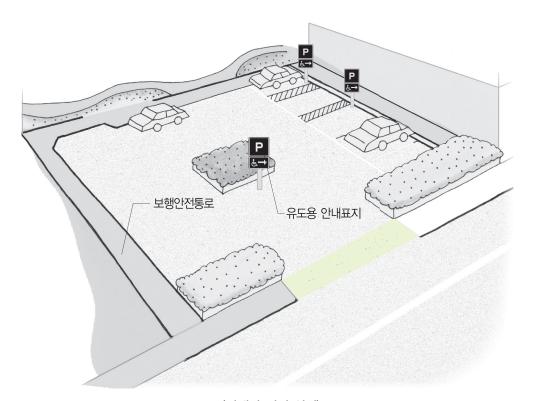
〈장애인 주차대수 3대 인정〉

- 4) 주차장 안내표시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.
  - 도로에서 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유도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 - 입간판 형태의 안내표시 설치방법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중심부분 높이가 1.5m 정 도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.7m, 세로 0.6m로 한다.
  -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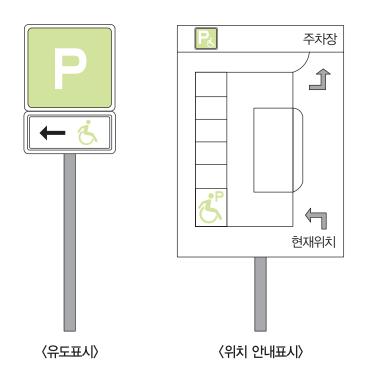


# 〈표지판 상세 내용〉

-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.
- 이를 위반한 차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.
-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-000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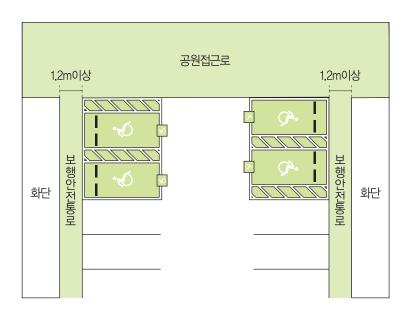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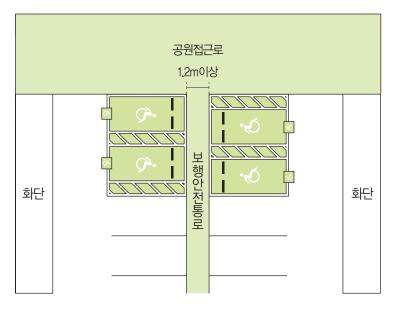
〈안내판 설치 위치〉



## 5) 보행안전통로
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공원 출입구까지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, 차량과의 교행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통행표시가 된 보행안전통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장애인 전용 주치구역에서 공원의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, 그 유효폭은 1.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



〈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〉